

제 호

## 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서

(앞쪽)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수명인  | 상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|
|      | 주소<br>(전화번호: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사업장 주소<br>(전화번호: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대상제품 | 제작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작국가 |
|      | 기계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출력 |
|      | 상품명칭 및 모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명령내용 | 대상제품에 대하여 실시한 소음도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므로, 대상제품에 대하여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명령합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소음도 검사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소음도 검사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소음도 검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dB(A)<br>※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dB(A) |      |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명령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작 인

※ 알려드립니다.

1. 소음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가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 기준 이하가 되도록 소음저감장치를 부착하고, 그 이행결과를 별지 32호의3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2. 만일 소음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·수입 또는 판매·사용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